

2018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

노사 양측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각급 의료기관의 발전,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상호 합심하여 노력하기로 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4 Out!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병원 만들기

<1> 공짜노동 Out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

1.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 ① 각 의료기관별로 시간외근무를 객관적으로 기록·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노사합의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 ②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 ③ 각 의료기관별로 노사동수의 노동시간 실태조사기구(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 근무조건 개선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구성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2. 장시간노동 금지 및 노동시간 단축

- ① 일 8시간, 주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단, 불가피하게 일 8시간 초과근무 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3. 적정인력 확충

- ① 의료기관별로 부서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노사합의로 마련하여 정원(T/O)으로 확정한다. 단,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관계기관과 부처 등 승인기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한다.

4. 야간·교대근무 개선

- ① 야간·교대근무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보다 개인별 N근무수가 더 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한다.
- ② 의료기관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근무제도를 마련하되, 근무표 작성과 변경, 휴가 부여, 근무인원 변경 등 세부사항은 의료기관별로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

5.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 ① 의료기관은 대리처방 등 의료법상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한다.
- ② 의료기관은 불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개별 근무자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 마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④ 의료기관은 직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PA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6. 모성보호

- ① 의료기관은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연장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7. 근무복 세탁

- 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무복을 의료세탁물로 간주하고, 개인 세탁이 아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태움 Out : 노동인권 유린 근절

1.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 ① 노사 정책TF회의에서 마련한 노사공동정책협약서 내용을 준용한다.

2.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① 성희롱 예방교육은 경영진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 ② 폭언, 폭행 발생시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한다.
- ③ 의료기관은 환자응대 메뉴얼을 마련하고,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노출 시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④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행위 시 불이익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 녹음전화기 설치, 경고문구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⑤ 노사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 조직문화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⑥ 노사는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⑦ 의료기관은 아래의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과 지침을 준수한다.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2017.11.9.개정, 2018.5.29. 시행)
 - 나.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2018. 1. 1. 시행)

3.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해결

- ① 의료기관은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심리 상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검진을 포함한다.
- ② 의료기관은 직원이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 휴가를 보장하되, 세부방안은 의료기관별로 노사합의하여 시행한다.
- ③ 의료기관은 직원의 충전과 적절한 감정노동 관리를 위해 안식휴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④ 의료기관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이 환자보호자로부터 분리나 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고, 심리치유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⑤ 환자보호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환자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4. 조직문화 개선

- ① 노사는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 가. 사비나 부서 회비로 의료용품, 환자용품, 사무용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 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원금과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위
 - 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종 대회와 행사에 동원하는 행위

<3> 속임인증 Out :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 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마련한 부서별·직종별 업무범위와 업무규정이 평가인증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유지·관리한다.
- ② 의료기관은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풀뽑기, 청소 등 환경정리, 규정 암기, 구술 또는 서면시험 등 일체의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4> 비정규직 Out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① 의료기관은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
- ②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른다.
- ③ 민간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을 전면 정규직화하며, 매년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④ 의료기관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정보의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비정규직 사용부서와 비율 (매월)
 - 나. 비정규직 사용인원 현황 (매월)
 - 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현황 및 계약 내용 (계약체결시 및 계약연장시)
- ⑤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차별과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의료기관별로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 임금

1. 임금 인상

- ① 2018년 임금인상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
- ② 2018년 임금인상 세부내역은 지부별로 정한다.

2. 최저임금 인상

- ①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른다.
- ②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래와 같이 하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 ③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외주·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영하도록 하고, 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산별임금체계 마련

- ① 의료기관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며,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 ②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별 노사 공동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 ③ 산별임금체계 연구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하며, 노사 대표단의 추인을 통해 확정하여 시행한다.

③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

1. 산별 노사관계 정상화

- ① 병원은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 현장교섭 등을 포함하여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시 성실하게 참가한다.

2. 사용자단체 구성

- ①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가)>를 구성한다.
- ②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법적 위상을 갖추기 위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관 또는 규약을 마련하고, 법률에 의거한 ‘사용자단체’로서의 지위 확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

3. 경영참가 보장

① 의료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및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경영참여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한다.

4 산별 노사공동 기금 마련

① 노사는 보건의료산업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기금을 마련한다.

② 기금은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비용 및 노사공동의 정책과제 연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목적 및 출연액, 기금 관리, 운용방안 등을 담는 규정은 노사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③ 노사는 2018년 산별 노사 공동기금으로 1억원을 조성하고, 노사 5:5로 분담하며, 사측 분담분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5 대정부 공동 요구

대정부 공동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제안을 반영하여 노조측의 요구를 정부에 제출한다.

1 4 Out!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1> 공짜노동 Out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

1.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 적정인력 확충

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Ratio's)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 기준(Ratio's)과 적정인력기준법을 마련한다.

②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따른 수가연동제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3.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

① 야간간호관리료 신설에 따라 적정 야간간호관리료를 책정하며, 야간관리료가 실제 야간근무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야간·교대근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야간·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모델을 마련한다.

나. 야간·교대근무제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다. 야간·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과 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③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휴식·휴게시간 보장

- 나. 최대 야간근무 일수 제한
 - 다.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 근무선택권 보장
 - 라. 야간근무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
 - 리. 기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 ④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나. 건강보험 급여지급 및 의료기관 평가기준 등과 연계방안 마련
- ⑤ 출산·육아기 모성보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가. 의료기관에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방안
 - 나. 야간·교대근무 등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방안
 - 다.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에 따른 지원방안
 - 라. 대체인력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인력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 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위생관리의 일환으로 근무복을 의료세탁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을 마련한다.

3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 금지

- ①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기준법 59조(특례업종)를 폐기한다.

4.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 ①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위원회(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 ② 대리처방 등 의료법상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③ 의료법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PA 문제를 해결한다.

5. 법제도 개선

- ① 보건의료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유인정책을 추진한다.
- 가. 각종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과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등의 지표 추가
 - 나. 2019년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과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포함
- ②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한다.

<2> 태움 Out : 노동인권 유린 근절

1.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 ①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②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 ③ 병동별로 1명의 프리셉터 간호사를 추가 정원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가를 신설한다.
- ④ 병동별로 1명의 프리셉터 간호사 배치 여부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포함하고, 경영평가, 의료질평가에 반영한다.

2.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①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 ② 의료기관별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선임을 의무화한다.
- ③ 의료기관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노출시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④ 의료법상 명시된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행위, 산안법상 감정노동 가해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을 추가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 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면허 재발급 절차와 요건을 강화한다.
- ⑥ 겸직 교수·의사가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기관 직원과 동일한 승진 제한을 받게끔 해당 교육기관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⑦ 의료기관을 관할 경찰서의 주기적인 순찰지로 지정하고 정기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 ⑧ 의료기관평가 인증 기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가.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고 문구를 부착한다.
 - 나.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 ⑨ 의료기관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를 시행한다.

<3> 속임인증 Out :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1.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 ① 의료기관인증평가기간의 환자수와 인력수를 바탕으로 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한다.
- ② 인증평가 전후에 대한 인력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시점검·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③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 ④ 조사방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조사위원의 자질을 향상한다.
- ⑤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인증제를 도입한다.

<4> 비정규직 Out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 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② 의료기관의 상시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의료기관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통일적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다.
- ④ 민간병원의 정규직 전환시 각종 평가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2 의료공공성 강화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 사, 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 분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기준을 산정할 때 ▲이직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OT기간 및 병가, 모성보호 휴가를 포함한 대체인력을 추가인력으로 산출 ▲수간호사를 인력배치 기준에서 제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대한 교육과 설명, 보호자와 연락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별도 배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 ④ 병실, 화장실, 세면실, 침대, 보호자 휴게실, 간호사 탈의실, 병동내 서브스테이션, 병동복도, 환자의 낙상방지 시설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한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및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최적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와 광고계획을 마련하고, 간호간병서비스병동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팀케어와 환자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이 정규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방안을 마련한다.
- ⑦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과정에서 인력쏠림 및 인력 수급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 간호등급제 개선

- ① 간호등급제가 실질적인 인력확충을 통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호등급제를 개선한다.
 - 가. 간호등급제 구간 세분화
 - 나. 실근무투입 간호사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
 - 다. 간호등급간 감산-가산폭 확대
 - 라. 간호수가 현실화
- ② 간호등급 미신고병원 및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3등급 미만병원에 대해서는 패널티제도를 마련한다.

3. 대한민국 의료이용체계 개선

- ① 무분별한 병상 확대,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의료기관 경쟁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의료이용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한다.
 - 나. 고가장비 도입 인허가 기준 강화 및 고가장비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다. 신규 병의원 개설 기준을 강화한다.
 - 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②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산업을 대표하는 노조를 반드시 포함한다.
- ③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한다.
- ④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기관수를 제한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4. 공공의료 확충

- ①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 ②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설, 민간병원 공공인수, 민간의료법인을 공공의료법인을 전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③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 국가치매병원을 설립한다.
 - 나. 국가노인요양센터를 설립한다.
 - 다.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확대한다.
 - 라.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 마.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부경남지역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 바. 파산한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부산시민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⑤ 공공보건의료강화위원회에 노조 참가를 보장한다.

5. 불법 의료행위 근절

- ① 불법적인 PA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적인 PA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 ② 고유직종의 업무가 타 직종 업무로 전가되고 있는 불법적·편법적 인력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6. 성과연봉제 폐지

- ① 과잉진료와 비싼 병원비를 강요하는 공공병원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한다.

7.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 ①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 ②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
- ③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 ④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실시한다.
 - 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 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실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누진제 강화, 건강보험료 납부의 투명성 보장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 마. 전체 예산 중 2.6% 수준의 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 상향한다.
- ⑤ 민영의료보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민영의료보험 급여대상을 비필수 부분으로 한정, 민영의료보험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한다.

③ 노동개혁

- ①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한다.
- ② 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한다.
- ③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한다.
- ④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 ⑤ 산별교섭을 요청할 시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참가하도록 의무화한다.
- ⑥ 영남대의료원, 인천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고, 해고자 없는 병원을 만든다.

- ⑦ 의료기관의 노조탄압을 근절하고 노조활동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 ⑧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

4 특성별 대정부 요구

<1> 특수목적공공병원

1. 태움과 관련된 간호직의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도입

- 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종합대책(3.20. 발표)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한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

- ① 공공의료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별도의 정원(T/O)을 허용한다.

3. 적정인력 확충

- ① 공공의료기관의 총정원제를 폐지한다.
- ②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필수 인력을 확충할 경우 정원을 증원한다.

4.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폐지

- ① 2016년 정년 연장 없이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
- ② 공공의료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한다.

5. 예산 운영과 지원

- ① 공공사업별 예산 책정이 아닌 공공병원으로서 기본적 역할수행을 위한 탄력적 예산을 지원한다.
- ② 공공의료기관의 자연승호분은 총인건비 인상율에서 제외한다.
- ③ 공공의료기관의 실행예산에 "인건비 중 처우개선은 수입 달성 또는 수지잉여금 발생시 잉여금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는 단서 조항은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
- ④ 적자보전을 위한 보조금예산의 삭감을 금지하고 보조금 예산을 증액한다.

6. 의료기관별 대정부 요구

가. 한국원자력의학원

-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 2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명시된 설립 취지와

사업에 근거하여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 ② 과학기술특성화병원 구축을 통해 방사선의학 선도 및 국가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 ③ 완공 예정인 플랫폼 신약개발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 ④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사업’ 및 ‘국가방사선비상진료,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의학원의 역할 확대 방안
 - 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진료 체계 보강 및 인적·물적 자원 추가 확보, 탈원전 과정에서 방사선물질의 폐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운영 등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 강화 및 확대방안
 - 다. 국가 방사선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방사선비상진료 및 교육 기능 강화 방안
 - 라.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방안
 - 마. 신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고, 국내외 위상에 맞는 기관의 미션과 책임 부여 등 기능과 역할의 확대 방안

<2> 지방의료원

1. 인력 지원

- ① 근무당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기준 미달시 패널티를 적용하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 ② 의사인건비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 ③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지방의료원을 포함한다.
- ④ 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가.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예산을 증액한다.
 - 나.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할당제를 시행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 다.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3년 이상 근무 시 일정기간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하고, 기여한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 라. 보건복지부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효율적인 의사인력 모집과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⑤ 의료인력 수급난 해결과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⑥ 의료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지원한다.

2. 공공의료사업 수행

- 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7대 필수의료영역(①응급·외상 ②심뇌혈관 ③모성·분만 ④감염 및 위기 대응 ⑤노인돌봄(호스피스, 재활) ⑥정신(자살예방, 치매) ⑦암)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 ②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가정간호사업, 만성관리, 무료이동진료,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의료취약대상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 진료사업, 행려환자 의료지원사업 등)을 상시·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한다.
- ③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과 국가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의료원 소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이에 필요한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한다.

3.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 ① 지방의료원-보건소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 ②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제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한다.
 - 가. 필수진료시설 운영 가산율 상향 조정 : 필수진료시설 운영 가산율 현행 2%에서 12%로 상향하여 현행 최대 기관당 가산율을 35%에서 45%로 상향한다.
 - 나. 취약계층진료 가산율 변경 :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이 중간(10 ~30%) 레벨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 레벨은 가중하고, 10% 미만의 경우 가산율 적용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실 상시 준비(공실로 환자 대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한다.
- ③ 악성기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경영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채 이자 부담분과 공공의료정책 수행으로 인한 시설·장비 구입비, 직원희생에 바탕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중간정산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긴급자금 등 기채 발생 원인과 규모를 감안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④ 흑자를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 ⑤ 지방의료원의 평가지표를 공공적 역할 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로 개선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상 경영평가 대상에서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운영평가로 일원화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상 성과계약제를 지방의료원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지침 상 성과계약제를 폐기한다.

4. 지방의료원내 폭력 근절

- ① 지방의료원내 폭력(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근절을 위해 지방의료원 내에 주취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5. 노사관계 발전

- ①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3〉 민간중소병원

1. 인력문제 해결

- ① 간호사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수급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가.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제도 마련
 - 나. 의료취약지 및 민간중소병원 간호사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도입
 - 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 라. 인력수가 및 숙련가산제 마련
 - 마. 대기인력 축소 및 대기인원 감축 등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적정 인력관리방안 마련
 - 바. 간호등급 구간 세분화, 간호관리료 현실화, 간호등급 미신고 및 3등급 미만시 패널티 부여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 ① 직장어린이집을 직영하지 않고 타 어린이집에 위탁할 경우 30%를 지원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해당되는 자녀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②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사업장 대상 기준(여성 상시고용 300인 이상, 전체 상시고용 500인 이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3. 병원 내 폭력과 인권유린 근절

- ① 관할 경찰의 상시순찰코스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응급실 등 병원 곳곳에 관할 경찰서 명의의 폭력 근절 경고 문구를 부착한다.

4. 민간중소병원 발전

- ① 민간중소병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가. 민간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연구
 - 나.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중소병원이 수행할 공공의료사업 연구
 - 다. 민간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공공의료사업 수행 협약 체결
 - 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 추진을 위한 광역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활성화
 - 마.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
- ② 정부는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

다.

가. 공급 과잉 병상수를 조절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및 적정병상 유지정책 추진
나. 공공인수, 공익의료법인 전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협약 체결과 지원 등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적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다. 폐업하는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퇴로 마련

라. 공공병원 신설방식이 아닌 민간중소병원 공공인수방식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추진

마. 의료법인 요청시 민간중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우선 인수하고, 특별법을 통해 해당 의료법인 해산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 ③ 병원이 인력집약산업이자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중소병원의 자산총액,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조정한다.

5. 의료기관인증평가

- ① 의료기관인증평가 혁신 TF팀에서 2주기 인증평가 혁신방안을 포함하여 혁신안을 마련한다.
② 2주기 인증평가 대상병원 중 2018년 상반기 대상병원은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 하반기 이후 대상병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 혁신 TF팀에서 혁신안을 마련할 때까지 인증평가를 보류한다.

<4> 정신·재활·요양병원

1. 정신병원

- ① 환자수 대비 실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기준을 마련하며 비간호 인력(예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행정 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
② 알콜릭, 조현병, 중독 등 질환 특성에 맞게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③ 보호사 제도를 표준화한다.
④ 정신병원 간호인력 수가를 개선한다.
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실질환 정액진료비를 인상한다.
⑥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당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재활병원

- ① 국립고통재활병원 및 권역재활병원을 법인화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관리부처를 일원화한다.
② 전문재활치료(이학요법) 등에 대한 경력 반영 수가를 개발한다.

- ③ 재활치료 전달체계를 정비한다.
- ④ 국립재활원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 요양기관

- ① 처우개선비를 복원한다.
- ② 휴게시간 과다 부여에 의한 공짜노동을 근절한다.
- ③ 야간수가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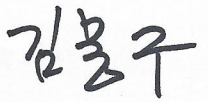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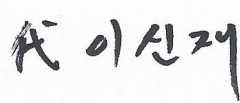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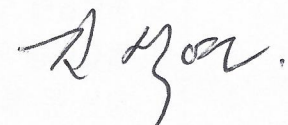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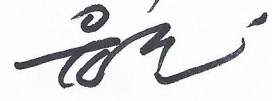
4. 정신건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2018년 12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순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교섭대표

- 공동대표 이 문 형 
- 공동대표 김 봉 구 
- 공동대표 김 태 완 
- 공동대표 정 기 현 
- 공동대표 김 미 숙 
- 공동대표 김 석 연 
- 공동대표 윤 진 
- 공동대표 송 관 영 